

2024년 Updated!

FP전문성 향상을 위한
세금상담 실전

상속세 편

강사 : 이지희 세무사



Contents Flow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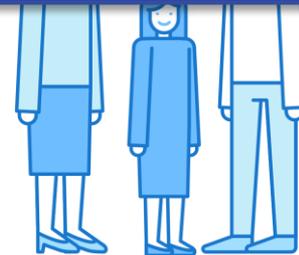
과정개요

- 1 상속세
- 2 증여세



기대효과

상속세의 계산구조 및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객에게 개략적인 상속세 산출 및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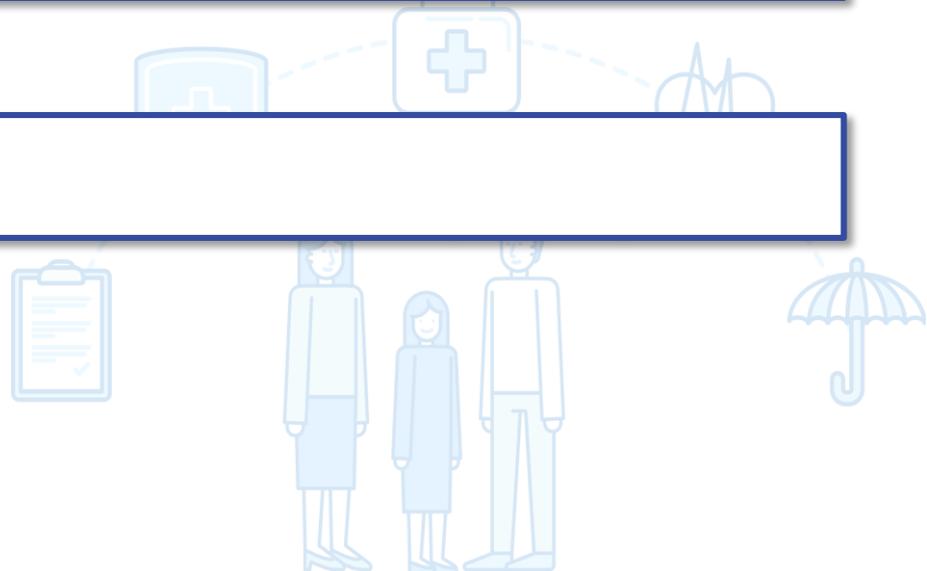


상속세 납세의무자

상속인 :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자

수유자 :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

피상속인은 사망자



상속세 계산구조

구분	구분	설명
총 상속재산	본래의 상속재산	상속(의사표시X), 유증(유언 의사표시, 단독행위), 사인증여(쌍방계약)
	간주상속재산	- 보험금;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,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취, 피상속인이 계약자 또는 보험료 납부 - 신탁재산 - 퇴직금; 법에 의한 유족연금, 유족일시금은 제외
	추정상속재산	- 상속개시일 전 1(2)년 이내 재산처분, 인출, 채무부담액이 2(5)억원 이상인 경우 =사용처 미입증액 - MIN(재산처분액×20%, 2(5)억원)
(-) 비과세 등	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	- 비과세; 전사자,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, 금양임야 등 - 과세가액 불산입;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
= 상속재산가액		
(-) 공제금액	공과금	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등
	장례비	500만원 ≤ 실제발생비용 ≤ 1,500만원
	채무	보증채무, 연대채무 포함
+ 합산 증여재산		상속개시 전 10(5)년 내 상속인(상속인 아닌 자)에게 증여한 재산
= 과세가액		

상속세 계산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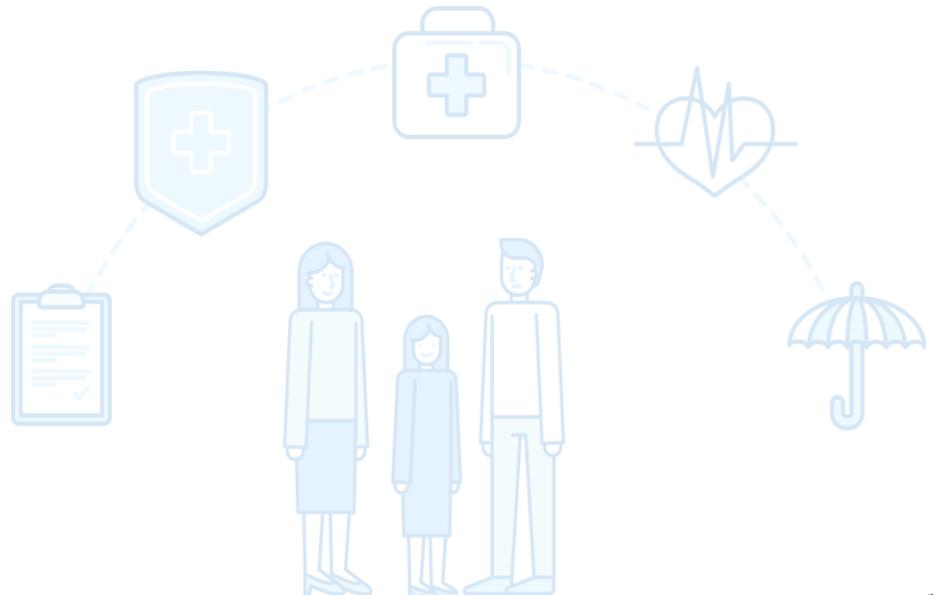
구분	구분	설명
과세가액		
(-) 상속공제 = MIN($\Sigma 1 \sim 7$, 8의 공제한도)	1. 기초공제	2억원
	2. 기타인적공제	- 자녀공제; 자녀수 \times 1인당 5,000만원 - 미성년자공제; 미성년자수 \times 1,000만원 \times 19세까지의 잔여연수 - 연로자공제; 연로자수 \times 1인당 5,000만원 - 장애인공제; 장애인수 \times 1인당 1,000만원 \times 기대여명 연수
	3. 일괄공제	= MAX(5억원, 기초공제 2억원+기타인적공제)
	4. 배우자공제	- 배우자공제액 = MIN(1, 2, 3) 1.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 2. 공제한도 = (a-b+c) \times d-e a; 상속재산의 가액 b;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 c;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;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e; 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3. 30억원
	5. 금융재산상속공제	- 순금융재산(금융재산 - 금융부채) 기준 - 2,000만원 초과; MIN[MAX(2천만원, 순금융재산가액 \times 20%), 2억원] - 2,000만원 이하; 순금융재산가액 전액

상속세 계산구조

구분	구분	설명
(-) 상속공제	6. 재해손실공제	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, 훼손가액
	7. 동거주택상속공제	주택가액(부수토지 포함)의 80% (6억원 한도)
	8. 공제 종합한도	= 상속세 과세가액 -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, 사인증여한 재산 -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- 합산대상 증여재산 과세표준(*) (*)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에만 적용
= 과세표준	과세최저한 50만원 미만	
(x) 세율	1억이하	10%
	1억초과 5억이하	20% (누진공제액 1,000만원)
	5억초과 10억이하	30% (누진공제액 6,000만원)
	10억초과 30억이하	40% (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)
	30억초과	50% (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)
+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	30%(40%)	= 상속세 산출세액 × (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÷ 총 상속재산가액) × 30%(40%,*) (*)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
상속세 계산구조

구분	구분	설명
= 산출세액		
(-) 세액공제	증여세액공제	= MIN(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, 공제한도액)
	외국납부세액공제	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 산출세액
	단기재상속세액공제	상속개시후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재개되는 경우
	신고세액공제	소정 산출세액의 3%
= 자진납부세액		



추정상속재산 사례(계속)



1단계	3억원	용도불명금액 확인(1년이내 2억원 이상)
2단계	6천만원	허용금액 확인, 용도불명금액의 20%(2억원 한도)
3단계	2.4억원	상속추정금액 = 용도불명금액 - 허용금액

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전략

사례

- 상속인: 배우자, 자녀2명
- 상속재산: 금융재산10억원, 아파트 12억원, 상가 26억원, 총 48억원
- 채무공제액: 8억원(상속재산에 대한 담보부 채무)

1

사전증여



2

사전처분



- 상속재산 사전분산
- 상속세 최소화

1단계

현 보유재산 파악 및 상속세 산정

2단계

현 보유재산을 근거로 향후 10년후 상속재산 평가액 추정,
이에 근거한 상속세 추정(10년마다 재수행)

3단계

사전증여 및 처분전략 수립
10년주기 증여, 저평가 자산 사전증여 등

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전략

(1단계) 현 시점의 상속세 산정

구분	설명	
금융재산	1,000,000,000	
아파트	1,200,000,000	
상가빌딩	2,600,000,000	
상속재산	4,800,000,000	= 금융재산+아파트+상가빌딩
(-)채무공제	800,000,000	상속재산에 대한 담보부 채무
과세가액	4,000,000,000	
(-)상속공제	1,200,000,000	일괄공제(5억), 배우자공제(5억), 금융재산공제(2억)
과세표준	2,800,000,000	
산출세액	960,000,000	= 2,800,000,000 × 40% - 160,000,000
(-)신고세액공제	28,800,000	= 960,000,000 × 3%
자진납부세액	931,200,000	



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전략

(2단계) 10년후 상속세 추정

구분		설명
금융재산	1,300,000,000	10억에서 가치증가 가정
아파트	1,200,000,000	가치증가 없음 가정
상가빌딩	3,170,000,000	26억에서 가치증가 가정
상속재산	5,670,000,000	= 금융재산+아파트+상가빌딩
(-)채무공제	800,000,000	상속재산에 대한 담보부 채무
과세가액	4,870,000,000	
(-)상속공제	1,200,000,000	일괄공제(5억), 배우자공제(5억), 금융재산공제(2억)
과세표준	3,670,000,000	
산출세액	1,375,000,000	= 3,670,000,000 × 50% - 460,000,000
(-)신고세액공제	41,250,000	= 1,375,000,000 × 3%
자진납부세액	1,333,750,000	



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전략

(3.1단계) 사전증여시 10년후 상속세 추정

구분		설명
금융재산	1,300,000,000	10억에서 가치증가 가정
아파트	1,200,000,000	가치증가 없음 가정
상가빌딩	1,220,000,000	26억에서 배우자에게 6억원, 자녀2인에게 각 5억원(총 10억원) 사전증여후 증가된 가치 반영
상속재산	3,720,000,000	= 금융재산+아파트+상가빌딩
(-)채무공제	800,000,000	상속재산에 대한 담보부 채무
과세가액	2,920,000,000	
(-)상속공제	1,200,000,000	일괄공제(5억), 배우자공제(5억), 금융재산공제(2억)
과세표준	1,720,000,000	
산출세액	528,000,000	= 1,720,000,000 × 40% - 160,000,000
(-)신고세액공제	15,840,000	= 528,000,000 × 3%
자진납부세액	512,160,000	



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전략

(3.2단계) 사전증여시 증여세 산정

구분	배우자	자녀	설명
상속재산	600,000,000	500,000,000	상가빌딩
(-)증여공제	600,000,000	50,000,000	
과세표준	0	450,000,000	
산출세액	0	80,000,000	= 450,000,000 × 20% - 10,000,000
(-)신고세액공제	0	2,400,000	= 528,000,000 × 3%
자진납부세액	0	77,600,000	
		155,200,000	= 자녀2인 × 77,600,000

사전증여한 경우(667,360천원=상속세 512,160천원+증여세 155,200천원) 가
 사전증여 없는 경우(1,333,750천원)보다
666,390천원만큼 절세



세금 상담